

답 변 서

사 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

청 구 인 명광복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첫째,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상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대상이며, 대법원도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
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직무관련성 심사관련 정보의 비공

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합니다)는 행정작용을 하기위해 행정안전부라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한 법정기구이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곳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는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시 제출되고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던 자료로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2012. 6. 7.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심사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심사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식대로 연도별 심사현황을 기관별로 세분하여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2. 6. 18.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을 제1호증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은 2012. 4. 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합니다)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한 공직자 명단 및 결과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거나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2. 5. 9. 통지하였으며(소을 제2호증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5.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2012. 5. 24. 통지한바 있습니다.(소을 제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정)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4.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7(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와 엄격한 기준에 따른 비공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별표1]은 이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사생활의 보호와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7조의7 제4항에서 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인 직무관련성 심사현황을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곳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2012. 4. 17. 윤리위원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한 공직자 명단 및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거나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고 합니다)를 개최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는 동일한 논리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개내용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으로 수정하여 정보공개를 재요청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5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성격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자문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기구와 상근직원이 없는 자문위원회로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소을 제4호증 행정안전부 위원회 현황)

다. 청구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었던 자료로 공개되어도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연도별로 행정부는 정부조직도에 따라 소구분하고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소구분하여 심사결과와 계류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 국정감사 및 과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던 자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회, 행정부, 지자체, 대법원으로 구분하여 공개시점까지 총 심사현황을 누계로 작성한 단순 통계자료로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이라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와는 달리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하나의 위원회만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성은 국회·대법원·정부에서 각 3인을 추천하는 9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어떤 기관에도 편파적인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요청한 연도별·기관별 심사현황자료를 공개할 경우 수치 등에 의한 단순비교가 수반되고 이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의한 공정한 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위원들은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거나 본인을 추천한 기관을 의식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재산공개자(정무직공무원, 1급이상 공무원 등)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고 그 중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해당주식을 보유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심사결과나 계류 중인 사항이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또한 계류중인 심사에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의 경우 2012년 재산공개자가 2명이고, 2명 중 보유주식 3천만원을 초과한자가 a 한명뿐인 경우, a의 소속·이름·보유주식내역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재산공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가 2012년도 A기관의 심사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 a의 심사결과가 공개되는 결과가 됩니다.

더욱이 a의 심사가 아직 진행중인 상태에서 계류중 1건으로 공개가 되면 a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공개 되는 것이며, a와 유사한 직위에서 유사한 주식을 보유한 자나 그 외 이해관계자, 여론 등이 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주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4. 결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심사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법령상 근거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생활의 보호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려진 적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을 제1호증 | 2012. 6.18.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
| 1. 소을 제2호증 | 2012. 5. 9.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
| 1. 소을 제3호증 | 2012. 5. 4.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 |
| 1. 소을 제4호증 | 행정안전부 위원회 현황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2012. 7. 2.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심판수행자 이 효 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